

5. 대법원 2005.11.10. 선고 2004다40597 판결 [보증보증금]

판결요지

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(소극)

【원고, 상고인】 ○○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○○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○○외 1인

【피고, 피상고인】 ○○보증보험 주식회사의 1인

【피고를 보조참가인】 정리회사 ○○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심○○의 소송수계인 구○○의 소송수계인 ○○건설 주식회사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법 2004. 7. 2. 선고 2004나4319 판결

【주 문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이 유】

1.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

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, 그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,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·입증되어야 하는바,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

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(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2000다35771 판결, 2001. 1. 19. 선고 2000다42632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 내지 제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계약이행보증금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.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.

그리고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